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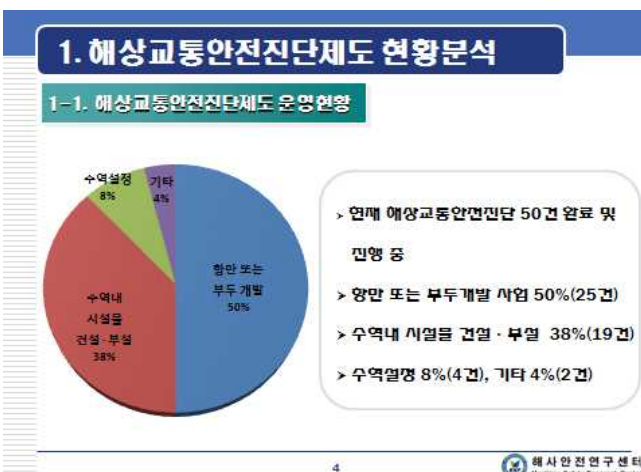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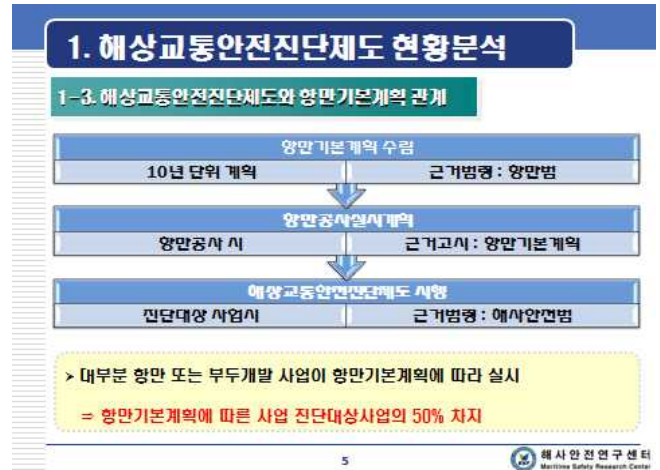
# 해상교통안전진단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항만기본계획의 제도적 고찰

† 김부영 · 조익순\* · 조경민\*\*

† 선박안전기술공단 연구원, \*선박안전기술공단 센터장, \*\*부산지방해양항만청 감사관

**요 약** : 해상교통안전진단제도가 2009년 도입 이후 50여건의 해상교통안전진단이 종료되었거나 진행 중에 있다. 항만기본계획에 따른 부두건설이 진단실적 중 50%를 차지하고 있어, 항만기본계획에 따른 부두건설 사업은 해상교통안전진단제도에 절대적이다. 하지만, 해상교통안전성 검토가 미비한 항만기본계획은 부산신항의 유류기지 건설, 울릉도 사동항 부두건설 등의 사업지연 및 경제성 미확보 등의 문제로 나타나게 되었다. 따라서, 항만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및 법적절차를 분석을 통하여, 해상교통안전진단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제도적 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.

**핵심용어** : 해상교통안전진단제도, 항만기본계획, 해상교통안전성



† 교신저자 (연희원) bockduckbang@hanmail.net

\* 중신회원 iks23@hanmail.net

\*\* 연희원 msminkr@korea.kr

## 2. 문제발생 진단사례

### 2-2. 울릉도 부두건설 사례

- 울릉도사동항 사례
  - 항만기본계획에 따라 대형 여객선 취항 (3천톤급) 위해 2008. 11. 개항
  - 문제점
    - 중앙항 위치 상존
    - 접이안 시 선외구역 협소, 대각도 변형
    - 방파제 중첩 위험성 제기(중첩 10.2m, 연 50%)
    - 서계상 좌역으로 인한 이용제한 요소
- 사업대상선박(여객선)의 이용불가 발생으로 인한 사업대상성 문제발생



7

## 3. 항만기본계획 수립 절차 분석

### 3-5. 항만기본계획 수립절차 종합 분석

기본계획  
구상단계

기본계획  
수립단계

기본계획  
확정단계

해상교통안전 관련 부서 및 전문가 타당성 검토 필요

⇒ 계획수립 이전 제도적 보완을 통한 해상교통안전성 확보 필요

18

## 2. 문제발생 진단사례

### 2-3. 사례 종합

부담심항  
유류 기지 및  
수리기지  
건설사업

- 이용짜간 의견충돌
- 사업지연 발생

울릉도 사동항  
부두건설 사업

- 건설부두 사용불가
- 경제적 손실발생

항만기본계획의  
안전 타당성 검토 미비

8

## 4. 항만기본계획 법적 절차 분석

### 4-1. 항만기본계획 법적 절차 개요

항만기본  
계획  
수립  
(제5조)

항만기본  
계획의  
내용  
(제6조)

중앙행정  
기관장  
및 시도  
지사  
협의  
(제5조)

항만정책  
심의회의  
(제4조)

항만기본  
계획  
고시  
(제8조)

항만기본  
계획의  
변경 등  
(제 7조)

19

## 3. 항만기본계획 수립 절차 분석

### 3-1. 항만기본계획 개요 및 수립절차

- 항만기본계획 개요
  - 수립 목적 : 항만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개발과 운영
  - 기간 및 적용항만 : 10년 단위로 계획 수립 / 전국 무역항 및 연안항
    - 3차 항만기본계획 : 2011~2020년 / 전국 무역항 29개, 연안항 25개(총 57개)
  - 근거 법률 : 항만법 제5조

#### 1차 항만기본계획(제2-2011)

- 항만법 개정 및 항만기본계획 도입 제1차 계획 수립·고시
- 권역별 특성을 통한 항만시설 계획

#### 2차 항만기본계획(제2-2011)

- 부가기준을 정하는 중요 국가 산업으로 항만산업 육성 전략 수립
- 수요 창출을 위한 여객선 및 지역별 거점항만 개발 추진

#### 3차 항만기본계획(제11-2020)

- 항만이 안보에 미치는 부가기준 중대해 위한 항만공간 재창조
- 항만인프라에 대한 중장기 투자 규모 및 계획

9

## 4. 항만기본계획 법적 절차 분석

### 4-2. 항만기본계획 법적 문제점 종합 도출

중앙행정  
기관장  
및  
시·도지사  
협의

항만기본  
계획의  
변경

항만공사  
실시계획의  
수립과 승인

항만기본계획의 심의절차, 변경사유, 승인요건에서의

해상교통안전성 고려 미비

⇒ 법적 보완을 통한 해상교통안전 확보 필요

23

## 5. 안정적 운용을 위한 제도적 대책

### 5-1. 안정적 운용을 위한 대책 제시



25

## 5. 안정적 운용을 위한 제도적 대책

### 5-4. 양만기본계획 변경 단계

> 양만기본계획의 변경사유로 교통문제만 반영

→ 업행 범으로도 기본계획 변경은 가능하나, 교통·환경문제만 기본계획 변경 사유로 반영

항만법 제73차항만기본계획의 변경 등	
<b>&lt;현행&gt;</b> ①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토해양부장관은 급격한 경제상황의 변동 등으로 항만기본 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항만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.	<b>&lt;변경안&gt;</b> ①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토해양부장관은 급격한 경제상황의 변동, <b>교통, 환경 문제</b> 발생 등으로 항만기본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항만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.

28

## 5. 안정적 운용을 위한 제도적 대책

### 5-2. 양만기본계획 구상 및 수립 단계

> 後양만계획수립, 先안전진단 실시

> 양만기본계획 대상 항만의 안전위해요소의 분석을 통한 안정적 양만기본계획 수립 가능  
→ 예산 및 진단기간 등을 고려시 현실적으로 불가능



> 기본계획구상단계에서의 해상교통안전진단대상 검토  
> 입지선정 및 영향조사단계에서의 관계기관해상교통안전진단제도 담당부서의 도면 검토등의 참여 제도와

26

## 5. 안정적 운용을 위한 제도적 대책

### 5-5. 항만공사실시계획 승인 단계

> 양만공사실시계획의 승인시 '환경영향평가' 에 따라 양만공사의 승인 여부를 판단 → '해상교통안전진단' 을 평가 요소로 반영

항만법 제103차항만공사실시계획의 수립과 승인 등	
<b>&lt;현행&gt;</b>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항만공사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으려는 비면허점이 다른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.	<b>&lt;변경안&gt;</b> ① <b>A.항만공사실시계획이 「해사안전법」 제15조부터 제24조까지의 규정 에 따른 검토내용의 이행사항을 충족할 것인지</b>

29

## 5. 안정적 운용을 위한 제도적 대책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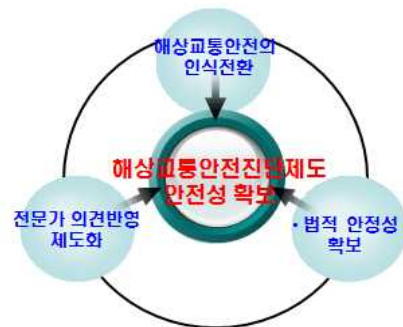
### 5-3. 양만기본계획 확정 단계

> 중앙양만정책심의회의, 지방양만정책심의회의에 해상교통안전분야 전문가의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토록 하는 법령 개정

항만법 시행령 제43차중앙양만정책심의회의의 구성·기능 및 운영	
<b>&lt;현행&gt;</b> 3. 항만의 개발·운영, 도시계획·건축·환경, 해당 레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과 항만이을지를 대표하는 사람 중에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	<b>&lt;변경안&gt;</b> 3. 항만의 개발·운영, 도시계획·건축·환경, 해상교통안전, 해당 레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과 항만이을지를 대표하는 사람 중에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

27

## 6. 결론



31